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김창수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사회 문화 교류

INFO 서독인들은 통일 이후에 서로를 ‘오시’(Ossi-동쪽놈), ‘베시’(Wessi-서쪽놈)라고 부른다. 오시와 베시는 통일 이후에 새로 사전에 오른 말이라고 한다. 통일이 된 지 10년이 지났어도 동서독인들 사이에서 마음의 통일은 아직도 멀었다. 1997년에 로만 헤어초크 대통령이 공영 TV의 토크쇼에서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는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어야 동서독은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베시와 오시를 합친 ‘보시’(Wossi)라는 말도 등장했다고 한다. 보씨는 동독 지역에 사는 서독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씨는 동독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자본주의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독일의 진정한 통일은 보시가 많아질 때 가능할 것이다.

통일 이후 25년이 지난 베트남에도 지역 감정의 벽이 존재한다고 한다. 베트남의 지역 감정은 전쟁 과정에 입은 상처로 인한 남

쪽 지역의 북에 대한 반감, 혁명 주체 세력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대해 가지는 부패하고 외세 의존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과거 왕조시대 도움지로서의 문화적인 자부심이 강하지만 정치·경제적으로 낙후한 데 따른 중부의 소외감과 불만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감정은 아직도 베트남의 통일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독일이나 베트남의 통일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제도의 통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는 분단의 세월 동안 남북한 거래의 마음속에 쌓인 미움을 녹이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사회 문화 교류는 통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문화 교류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끄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

이런 점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홀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고, ‘사회, 문

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회 문화 교류에 대한 남북의 입장

1991년 12월 13일에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사회 문화 교류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제3장 남북 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 하고,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고 나타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기본합의서와 비교해 볼 때 '교육',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가 제외되고 '환경'이 추가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가 제외된 것은 북한이 언론·출판 분야의 교류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개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인민이 서로 단합하고 동지적으로 협조하면서 건전하게 일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저러한 사회적인 병폐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이처럼 깨끗한 우리 사회를 악취 풍기는 썩은 문화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교류를 통해서 이른바 '자유 바람'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북한은 종교 교류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종교 교류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번 6·15 공동선언에서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1989년부터 종교 교류는 활발해졌다. 1989년 이후 불교계 인사의 방북이 98건, 천주교 계통이 26건, 개신교 159건, 천도교 20건, 원불교 등 기타 종교가 34건이었다. 이런 종교 교류는 대부분 남한 종교계의 대북 지원과 관련된 것이고, 또 북한 종교인의 남한 방문은 없었다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예술 작품과 문화 유물의 교환 전시, 스포츠 교류 및 예술단 방문 등에는 적극적이며, 언론 매체의 교류 및 개방, 언론인 그리고 종교 교류는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회 문화 교류는 남북이 합의한 것을 중심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

북한은 예술 작품과 문화 유물의 교환 전시, 스포츠 교류 및 예술단 방문 등에는 적극적이며, 언론 매체의 교류 및 개방, 언론인 그리고 종교 교류는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회 문화 교류는 남북이 합의한 것을 중심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

시켜야 한다.

스포츠 교류의 경우 남북 양측의 정치적인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시드니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6·15선언문에서 체육을 명문화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남북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언

론 교류나 종교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 언론사 사장들을 초청하기로 약속했으므로

남북 언론 교류도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동안 종교인들이 통일 운동이나 대북 지원 운동에 기여를 많이했다. 6·15 선언에는 종교 교류가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꾸준히 북한과 접촉해온 종교인들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종교 교류 역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표〉 남북고위급회담 협상 과정에서 문화 교류에 대한 남북의 주장

구분	남측	북측	비고
보도 매체 교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	자본주의 사회 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방 반대	△
종교 교류	종교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실시하고 종교인 등의 상호 교류 실시	종교 분야 교류는 절대 반대	×
언론 교류	언론·출판 분야 등의 상호 교류와 언론의 상호 교류 및 자유 취재 보장	언론을 명기할 필요 없으며, 민족 구성원 전체의 자유 교류가 실현되면 언론의 교류도 해결	×
체육 교류	체육인 교류 및 국제 경기 단일팀 참가	단일팀 구성 유보. 체육 분야에서 기술 협력, 접촉·교류 및 공동 행사 실시	□
예술단 교환	공동 기념일·민속 명절에 사회문화예술단 상호 교환	교환 시기를 명기하지 말고, 다각적 협력 추진으로	□
예술 작품·유물의 교환 전시	자료 및 경험 교환, 각자 보존하는 유물·예술 작품 교환 전시	민족 유물 발굴 및 민족 사회 문화 계승 사업 추진, 교환 전시 진행	○
저작권 보호	상대측의 출판, 연극, 음악 미술, 등 저작권 권리 보호	분야는 명시하지 않고 쌍방이 합의하여 저작권 권리 보호	△
자료 교환실 설치	판문점에 자료 교환실 설치	교환실이 아닌 사회 문화 분야 교류 협력에 필요한 기구를 협의	△
국제 무대 협력·대의 공동 진출	국제 행사 등에 공동 진출, 해외 동포에 공동으로 민족 전통 소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국제 기구들에서 서로 협력, 공동 가입	○

자료: 박상천 외(1993), 「북한의 문화 정책과 남북 문화 교류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pp. 27~29.

주: 비교란의 표시는 북한측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는 적극적, □는 비교적 적극적, △는 소극적, × 부정적.

이산 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비전향 장기수

남북공동선언에서는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범주는 모호하다.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희생자는 실향민, 비전향 장기수, 탈북자, 월남·월북자, 국군 포로, 납북자 등 여러 부류가 있다.

공동선언에서는 흩어진 실향민의 교환 방문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선언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규정했다는 점은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93년 3월에 송환된 이인모 노인에 대해서 북한은 '불멸의 화신', '통일의 영웅'으로 불렀다. 한편 북한은 이인모 북송 이후에는 김인서·함세환·김영태氏 등을 직접 거명하며 이들의 송환을 주장했다. 북한은 '전쟁 포로'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면서도 '국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왔다.

국가정보원은 1999년 3월 9일에 휴전 후 납북 억류자 454 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6·25전쟁의 미송환 국군 포로가 1만 9,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9년 2월 7일 북한에 생

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미송환 국군 포로의 숫자가 233 명이라고 한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1953년 포로 송환 교섭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다. 한마디로 북한에 "단 한 명의 포로도, 납치된 민간인도 없다"는 것이다. 탈북한 조창호氏 등을 통해 북한에 '국군 포로'가 있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군 포로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다. 북한은 6·25 전쟁 포로들은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전원 송환했다"고 주장해왔다. "우리에게 있다면 지난 조선전쟁 시기 남조선 괴뢰들의 반인민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공화국 품으로 의거하여온 이전 괴뢰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 북한의 한결같은 입장이다(조평통 대변인 성명(1999. 6)). 북한은 백령도 서북방 공해상에서 1987년 납북된 동진호 선원들의 송환에 대해서도 "동진호는 정탐 행위를 위해 침투했던 간첩선이며 선원들이 남조선으로의 귀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살고 있는 납북 어부들은 일정한 직업을 갖고 현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북 어부들은 대부분 공장에 다니거나 농장이나 과수원 또는 탄광에서 일하는데, 의사로 일하거나 정치 학교를 나와 대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으며 군사혁명사적지 관리원도 있다고 한다. 또 '대남연락소 지도원' 또는 남한을 오가는 '안내원' 등 간첩 업무에 종사하

인도주의에서 상호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국군 포로와 남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군 포로와 남북자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남북 관계에서 쉬운 것부터 풀면서 남북 사이의 신뢰를 구축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지혜로운 접근법 가운데 하나이다.

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다.

남북자 가족들은 “남북자들 가운데 남한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북한 당국이 이를 허락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남쪽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한다면 상호주의에 따라서 국군 포로 또는 남북자와 맞교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들은 조건없이 북반부로 송환돼야 할 사람들이지 그 누구와 바꾸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발해왔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비전향 장기수를 두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북한이 전쟁 포로의 국제법상 권리에 따라서 원적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氏를 비롯해서 유운형, 이종환, 강동근, 황용갑氏 등 전쟁 포로이다. 전쟁 포로의 원적지 송환은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조인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제네바 3협약) 제 181조에 “포로는 현실적 적대 행위가 끝난 후 지체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포로에게 유기 징역이 선고되어 그 형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형기

만료 후에 포로로서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송환 대상이 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인도적인 시각에서 이들의 송환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른 유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장기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공무원들로서 세계 최장기수로 알려졌던 우용각氏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비전향 장기수가 해당된다. 이들은 이미 장기 구금되어 법적 처분을 받았고, 구속되기 전 거주지가 북쪽이었으며, 자유 의사로 귀향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을 원거주지로 송환하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비추어보거나,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인도주의에서 상호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국군 포로와 남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군 포로와 남북자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남북 관계에서 쉬운 것부터 풀면서 남북 사이의 신뢰를 구축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지혜로운 접근법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6월 30일에 남북적십자회담에서 ‘8월 15일부터 3박 4일 동안 이산가족 100 명 동시 상호 방문’과 ‘비전향 장기수 희망자 전원 송환’을 합의한 남북 사이의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상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산가족의 주소 및 생사 확인, 우편물 교환, 상봉면회소 설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국군 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범위에 대해서 남북이 실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1992년에 채택된 사회 문화 교류 협력 부속 합의서에서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이 국군 포로와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또 납북자 가운데 북한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자를 실향민이나 비전향 장기수와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과 이산가족 교환 방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 속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자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협력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실과

이산가족 문제는 상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군 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협력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클 경우에 법의 정당성과 권위가 실추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손질이 필요하다.

법의 괴리가 클 경우에 법의 정당성과 권위가 실추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손질이 필요하다.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성사를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의 개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보안법 조항 가운데서도 제2조 반국가 단체 개념과 유엔 인권위에서 개정을 권고한 제7조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제10조 불고지죄 등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현실과 크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개폐가 불가피하다.

보수 세력의 본류임을 자임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해 온 자민련도 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 관계를 감안해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당론을 바꾸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국가보안법의 핵심 쟁점인 ‘반국가 단체의 개념’이나 ‘찬양·고무’ 조항은 평화 정착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굳이 개정 논의가 이뤄진다면 ‘불고지’ 조항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침만 정해놓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 1항에서 밝힌 목적은

안보 개념을 전환해서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우선시하고, 적정 군사력을 확보하여 남북 갈등을 관리하고, 나아가 통일 조국을 수호하며, 세계 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원과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국가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전하기 위한 안보 관련 형사법’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1948년의 격동기에 제1조의 국가 안보와 제2조 반국가 단체라는 두 가지 전제로 성립된 법이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냉전체제가 해체되었고,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도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접촉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민족적으로도 ‘공존 공영’을 중심으로 한 평화적 통일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

특히 냉전이 해체된 이후 안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인간 안보(Human Security)는 군사력보다는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안보를 달성한다는 안보 개념의 발상의 대전환이었다.

안보 개념을 전환해서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우선시하고, 적정 군사력을 확보하여 남북 갈등을 관리하고, 나아가 통일 조국을 수호하며, 세계 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원과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의 원천은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고, 국가 안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와 지금의 시대 환경의 차이, 안보 개념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으로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제2조에서 반국가 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헌법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이른바 ‘유일합법정부론’이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합법정부론’은 한국 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유엔 감시 하의 선거가 시행된 남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1948년 유엔총회 결의를 곡해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 3조를 근거로 한 반국가 단체 조항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또 국가보안법은 헌법 2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과 헌법 19조 “모든 국민은 양

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어긋난다.

특히 문명사적인 전환기라고 일컬을 정도로 급속도

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통일 국가 건설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발휘가 중요하다. 국가보안법은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억압함으로써, 21세기 통일 국가 건설을 향한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비를 가로막는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를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이나 북한 형법의 개정과 연계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은 두 체제가 공존하는 통일에는 위배되는 것이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북한의 형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1987년에 형법을 개정해서 과거 1974년 형법에서 문제가 되던 죄형법정주의 무시, 소급 적용 인정 등에 관련된 조항들을 일부 수정하였다. 물론 1987년 형법에는 공화국 전복 음모가담이나 이를 위한 선전 선동, 공화국을 배반하고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조국을 반역한 경우,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정탐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주요 반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남한의 형법도 국가 안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의 원천은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고, 국가 안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형법을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그대로 연결시키기보다는, 북한의 형법과 남한의 형법을 비교하면서 통일에 역행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의 손질도 필요하다. 이 법은 북한을 적대관계의 대상이 아닌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한 최초의 실정법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남북 교류 협력을 다루기에는 너무 낡았다. 남북의 환경은 급속히 변했는데도 제정 이후 한번도 손질하지 않았다. 경제적·인적·물적 교류와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류 협력의 증대라는 변화에 맞춰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편의적으로 법을 운용해왔고, 처음부터 과도기적 입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임시 방편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대북 사업에 대해 접촉 승인-사업자 승인-사업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해놓은 조항 역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신고제로 전환해주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